

축산법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농수산부령) 개정 공포

● 축산법시행령 개정령 ●

제 1 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돈”이라 함은 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종축중 씨암탉지와 씨수탉지를 말한다.
2. “종계”라 함은 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종축중 씨암탉과 씨수탉을 말한다.

를 받아야 할 축산업(양돈업에 한한다)의 규모는 모돈 500두이상으로 한다

제 5 조(종축의 등록과 검정) ① 농수산부장관은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의 등록 또는 검정을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가축의 종류에 따라 등록 또는 검정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등록 또는 검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경비의 일부를 종축의 등록 또는 검정을 의뢰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매부가금(이하 “부가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는 때에는 이를 징수대상품목별로 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의 경영자(이하 “부가금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부가금을 징수하여 축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법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도축하여 경매하는 때에는 지육경락자

2. 의뢰를 받아 도축하는 때에는 도축의뢰자

③ 부가금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금을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내에 축산업협동조합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1. 도축하여 경매하는 경우에는 경매한 날의 다음날

2. 의뢰를 받아 도축하는 경우에는 월간 도축분을 3등분하여 1일부터 10일까지의 분은 그달 12일, 11일부터 20일까지의 분은 그달 22일, 21일부터 말일까지의 분은 다음달 2일

④ 부가금 징수의무자가 부가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부가징수에 따르는 비용등으로 부가징수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납입한다.

⑤ 유통처리장·유가공장 및 수육가공장의 경영자는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유하는 원유 또는 도축하는 수축에 대한 부가금을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축산업협동조합등을 통하여 기금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적립한 부가금은 그달 17일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적립한 부가금은 다음달 2일

제9조(사료원료수입가격의 차액 납입등) ① 농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사료원료중 사료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원료에 대하여 품목별로 안정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가격이 고시된 품목을 수입하는 자(이하 “사료수입자”라 한다)가 기준가격이하의 가격으로 사료원료를 수입한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관리자에게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수산부장관은 사료수입자가 기준가격이상의 가격으로 사료원료를 수입한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료원료수입가격차액납입금의 범위안에서 기금관리자로 하여금 사료수입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입축산물판매수입금의 납입) ① 농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축산물판매수익금 납입대상자를 지정하고자하는 때에는 고시로 지정하되, 수입축산물판매수익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축산물의 품목을 정하여 당해 품목을 수입 판매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품목의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수입한 축산물의 판매수입금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금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호텔용으로 수입한 때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관이전에 축산업협동조합등을 통하여 기금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농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개시9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지침을 기금관리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자는 이에 따라 연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달계획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경비의 범위

③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보조) ① 기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신청서에 그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목적·주체·기간·내용 및 사업비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기금운용계획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기금의 용자) ① 기금의 용자는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용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용자방법 및 용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용자금리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기금사업비의 지원범위)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으로 부터 기금사업의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다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사업
2.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 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사업
3.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4. 축산진흥을 위한 기술지도·조사연구 및 보급선전
5. 기금재산의 관리 운영

제15조(기금운용실적 및 상황보고) ① 기금관리자는 매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을 매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다음날 20일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청문의 절차) ①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농수산부장관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허가
2. 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의 영업의 양도·임대 및 시설변경의 승인
3. 법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축산업자에 대한 감축명령
5.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축산업자에 대한 초과사육 부과금의 납부명령
6.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7. 법(법률 제3,738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허가

제18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법령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는 1985년 6월 30일까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로 본다.
- ③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초과사육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 7 조제 2 항 관련)

가축의 종류	산 정 방 법	산 정 기 준	비 고
종 돈	[전년도의 종돈(20kg기준)평균가격+(110kg×전년도의 비육돈 kg당가격)]×초과사육두수수	감축명령으로 정하여진 최고한도를 초과한 전 사육두수를 각각 130kg짜리 종돈 또는 모돈으로 보아 산정한다.	각 평균가격 및 평균생산비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가격을 적용한다.
모 돈	[전년도의 모돈(20kg기준)평균가격+(110kg×전년도의 비육돈 kg당 가격)]×초과사육두수		
종 계	(전년도의 종계육성계 평균 생산비-전년도의 종계병아리 평균가격)×초과사육두수	감축명령으로 정하여진 최고한도를 초과한 전 사육두수를 각각 종계육성계, 산란육성계로 보아 산정한다.	
산란계	(전년도의 산란계육성계 평균생산비-전년도의 산란계병아리 평균가격)×초과사육두수		
육 계	[전년도의 육계(1.8kg기준) 평균가격-전년도의 육계병아리 평균가격]×초과사육두수	감축명령으로 정하여진 최고한도를 초과한 전 사육두수를 1.8kg 짜리 육계로 보아 산정한다.	

주: 육성계라 함은 종계 또는 산란계중 첫 달걀을 낳기 직전까지 사육된 닭을 말한다.

◇ 축산법시행령 개정이유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축산법이 개정(1984. 8. 2. 법률제 3,738호)되어 종축업과 축산업이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종축업의 등록대상을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이 시급한 돼지와 닭을 대상으로 하는 종돈업과 종계업으로 한정하고, 종돈업에 있어서는 종돈 20두이상, 종계업에 있어서는 종계 1천수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만 각각 등록을 하도록 등록규모를 정함(령 제 3조)
- 나. 축산업의 등록대상도 돼지와 닭을 사육하는 양돈업과 양계업으로 한정하되, 양돈업에 있어

서는 모돈 50두이상 500두 미만, 양계업에 있어서는 산란계 3만수이상 또는 육계 1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만 각각 등록을 하도록 하고 양돈업에 있어서 모돈 500두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정함(령 제 4조)

다. 초과사육시 부과금의 부과기간은 초과사육두수에 대한 감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하고, 초과사육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 7조 및 별표)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축업 및 축산업 등에 대한 등록 취소·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미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청문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 16조)

마. 농수산부장관의 축산업허가권과,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의 영업의 양도, 임대 및 시설변경에 대한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령 제 17조) (법체처 제공)

● 축산법시행규칙중 개정령 ●

제 1 장의 제목 “종축”을 “종축·부화 및 축산”으로 한다.

제 1 조의 제목 “(집승의 종류)”를 “(집승의 종류 등)”으로 하고, 동조제 1 항제 2 호중 “꿍”을 “여우”로 하며, 동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 2 조제 4 호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이라 함은 돼지 및 닭을 말하며, “종란”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을 말한다.

1. 법 제 5 조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고유의 특징이 있는 것

2. 추백리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색결과 음성인 닭에서 생산된 것

제 3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사는 매년 3 월에 실시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의 2 내지 제 6 조의 4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 조의 2 (종축의 등록) ①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종축은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사에 합격하였으나 혈통증명서가 있는 종축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종축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장관이 영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종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종축의 등록신청과 등록종축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정하되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종축등록기관은 영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신청인으로부터 등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수수료의 금액은 종축등록기관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6 조의 3 (종축의 검정) ①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종축은 제 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이 되었거나 혈통보증이 되어 있는 가축으로 한다.

② 종축의 검정은 영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일반검정과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검정방법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일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의 2 서식의 종축검정신청서를 종축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축검정기관이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종축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 1 호의 2 서식의 종축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 4 항의 종축검정서의 유효기관은 그 발급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

⑥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능력검정 신청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정하되,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종축검정기관은 영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검정신청인으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의 금액은 종축검정기관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6 조의 4 (수출입허가대상종축등) 법 제 5 조의 2 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축 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 및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제 7 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 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해의 종축검사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 우
2. 종 마
3. 종 돈

제 16 조를 삭제한다.

제 1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7 조 (종축업의 등록등) ① 법 제 13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

표 1의 종축업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별지 제 9호서식의 종축업등록신청서에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의 등록신청내용이 별표 1의 종축업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 10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 11호서식의 종축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종축업의 등록을 하거나 종축업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종축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종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 14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축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18조제 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 2호중 “종계업등록필증의”를 “종축업등록증의”로 한다.

다만, 제 2호 및 제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업화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허가신청내용이 별표 2의 부업화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 12호의 2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 13호 서식의 부화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부화업자”라 한다)는 법 제 14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화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허가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19조제 1항중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부화업자”로 하고, 동조제 2항중 “종계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종축업자중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각각 “부화업자”로 한다.

제 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0조(종축업과 부화업의 정기 실태조사) 도지사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종축업과 부화업의 시설현황등 그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장에 제 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20조의 2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 ① 법 제 13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별지 제 9호서식의 축산업등록신청서 또는 축산업허가신청서를 관할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신청 또는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 10호서식의 등록대장 또는 허가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 11호서식의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 14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24조제 1항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 25조중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기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의 공급자 또는 공급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젓소정액의 공급자의 경우에는 별표 5의 시설과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 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8조 (도살금지가축) 농수산부장관이 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도살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가축의 종별·성별·연령등을 구분하고 도살금지 또는 제한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 6장에 제 5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3조의 2 (수입차액 납입대상 가축) 법 제 44조제 5항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가축”이라 함은 소를 말한다. 다만, 법 제 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종우를 제외한다.

제 55조제 1항중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조제 2항 및 제 5항의 규정에”를 “영제

8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7항중 "영 제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를 각각 "영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별표4"를 "별표6"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를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로 한다.

제58조 본문중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서"로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축산업등록기준(제17조제1항관련)

1. 종돈업

가. 돈사면적

(1) 씨수돼지(두당) : 13.2㎡ 이상

(2) 씨암돼지(20두 기준) : 132㎡ 이상

다만, 육성돈의 경우에는 성돈 해당면적의 50%이상으로 한다.

나.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 및 소독위생장비를 갖추는 것

다. 종돈장은 1년이상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곳일 것

2. 종계업

가.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을 갖추는 것

나. 세대별 구분사육시설을 갖추는 것

다.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 및 소독위생장비를 갖추는 것

라. 견고한 내구성 자재의 기사 및 계분창고를 갖추는 것

[별표3]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기준(제20조의2제1항관련)

1. 축산업의 등록기준

가. 양계업(산란계·육계)

1) 방역 및 위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

○정문 및 계사출입구의 소독조 시설

2) 분뇨 및 오물의 유출방지 시설을 갖추는 것

나. 양돈업

1) 축사상한면적(돼지사육에 직접 필요한 연면적 기준)

○사육두수 두당 2.5㎡이하

2) 방역 및 위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

○정문 및 돈사출입구의 소독조 시설

○소독 및 세척기구

3) 분뇨 및 오물의 유출방지지설을 갖추는 것

2. 축산업의 허가기준

가. 양돈업

1) 사육규모별 돈사기준 면적(돼지사육에 직접 필요한 연면적 기준)

	임신돈사 (모돈사)	분만돈사	자 돈 사	비육돈사	후보종돈 (모돈)사	종모돈사	계	
용도별	첫수태 또는 이유시부터 분만의 모돈사육	분만전후부터 이유시까지의 모돈사육	75일령전후까지의 자돈사육	75일령전후부터 출하시까지의 비육돈사육	75일령전후부터 선발시까지의 종돈사육	종모돈사육		
두당소요면적	4.3㎡	9.9㎡	0.8㎡	1.9㎡	1.9㎡	8.4㎡	—	
모 돈	단계별 두 수	400두	100두	1,500두	2,615두	85두	50두	4,750두
	돈 사 면 적	1,700㎡	1,000㎡	1,200㎡	3,100㎡	200㎡	400㎡	7,600㎡

비고 : ○돼지 500두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연면적은 위 기준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면적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500두를 초과 사육하는 경우에는 초과두수에 상응하는 두당소요면적을 추가 산정한다.

2) 폐수 배출방지시설 : 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와 별표7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 기준이상의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수배출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돈사시설의 부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니어야 한다.

[별표 5]

젖소정액공급시설 및 능력기준(제25조

2항관련)

1. 자기소유의 초지 100헥타르이상 소유할 것 - 보유초지중에 사료작물포가 50%이내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필한 젖소 암소 200 두 이상 보유할 것
3. 후대검정을 필한 씨숫소 3두이상 보유할 것
4. 외부로부터 차단된 정액채취장과 정액의 검사 보관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를 보유할 것
5. 축산 및 수의관계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3인이상일 것

◇ 개정이유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축산법이 개정(1984. 8. 2 법률 제 3,738호)되어 종축업과 축산업이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축산법령의 규율대상가축에서 꿩을 제외하고, 널리 사육되기 시작한 여우를 추가하며, 종축업등록대상이 되는 번식용가축으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이 시급한 돼지와 닭을 정함(영 제1조)
- 나. 종전에 매년 3월 또는 4월에 실시하도록 하던 종축의 검사를 매년 3월에 실시하도록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제1항)
- 다. 종축의 등록대상이 되는 가축을 종축검사에 합격한 종축과 혈통증명서가 있는 종축으로 하고, 그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영 제6조의 2)
- 라. 종축의 검정대상이 되는 가축을 종축 등록이 되었거나 혈통보증이 되어있는 가축으로 하고 그 검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영 제6조의 3)
- 마. 수출입시 허가를 받아야 할 종축 또는 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함(영 제6조의 4)

-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 및 종란
-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바. 종축검사에 합격한 종축에 대하여 교부하는 종축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발급일로부터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해의 종축검사일까지로 정함(영 제7조제4항)

사. 종축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과 능력기준을 정하고, 그 등록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7조)

아. 축산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과 능력기준을 정하고 그 등록·허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자. 가축의 도산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가축의 종별·성별·연령등을 구분하여 도축의 제한 또는 금지시기를 고시하도록 하도록 함(영 제28조)

차.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가축중 국내가격과의 차액을 축산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할 가축을 소로 정하되, 중우는 제외하도록 함(영 제53조의 2)

(농수산부 제공)